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박재희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령과 정부 문서 등을 분석하였고,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일등 치안 도시 구현이며, 정책 목표는 항구도시로서의 치안 확립,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둘째, 부산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본부에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대외 협력기능,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기능, 안전취약지역 분석 및 관리기능 등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준비 일환으로 자치경찰과 특사경,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수요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방행정 사무와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치안행정 운영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 주민 안전체감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치경찰제, 특별사법경찰, 주민참여, 부산광역시, 안전

I. 서론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경찰력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 이후로 계속되어 왔으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이 마련되었으나 추진여건 불비로 시행이 유보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문화하였고¹⁾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정책이슈 리포트,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1) 당시 지방분권법 제10조(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재 자치경찰제의 법적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③이다.

못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안을 유지하였으나 법제화는 무산되었다.²⁾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³⁾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구상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국정과제 제시, 그에 따른 경찰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할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부산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부산광역시에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배경 및 사무배분과 부산광역시 치안 및 경찰조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 설계 및 지방행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및 사무 배분, 부산광역시 치안 및 경찰 조직 현황 등은 경찰법 개정안(홍익표 의원 안)을 포함한 법령과 정부 문서를 위주로 기존의 문헌들을 분석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치안 여건에 적합한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의 도출과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2019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의견조사 대상은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1그룹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의 담당공무원(일반직, 경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그룹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또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행정학 및 경찰학 분야 전문가(교수, 박사급 연구원)로 구성하여 질문지 의견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⁵⁾ 질의서는 개방형 질문지 형태로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델 개발방향,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연계,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연계,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연계, 자치경찰과 재정지원, 기타 자치경찰제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메일로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2) 정권별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과 중단 배경은 최종술(2017)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3) 2018년 도입방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외 2개의 자치단체 등 총 5개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시범도입 예정으로 발표하였으며, 당정청회의에서는 시범실시지역을 5개 지역에서 2~3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4) 국회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하여 2019년 시범실시는 어려워졌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실시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시범도입과 내년도 전면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대면 인터뷰 시행 전에 질문지를 주고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의 쟁점들을 파악하여 인터뷰에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사무 배분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민주적인 경찰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사실, 중앙집권적 경찰체제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율적·창의적 치안활동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경찰행정, 지역 주민의 복리 및 민생치안 증진에 기여하는 치안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제도 및 행정의 분권화가 추진된 것이다. 또한,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경찰권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치안서비스의 현장 대응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지역 분산, 제주 자치경찰제의 한계 극복,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융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첫째,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지역 분산은 국가경찰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안전·교통·치안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우선한다. 이러한 국가 경찰권의 분산은 최근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 등이 결과적으로 경찰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둘째, 제주자치경찰제의 한계 극복이다.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제주경찰제의 정체성이 지자체의 질서행정을 수행하는 보조기관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제주자치경찰제의 성과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안영훈, 2018). 제주자치경찰은 경찰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범죄 진압을 위한 초동조치권이 없다는 점이다.⁶⁾ 이에 반하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자치경찰은 총 4만3천명의 인력으로 최일선 종합치안의 출발점인 인구대와 파출소 업무를 사실상 책임지게 된다. 또한, 공무수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과 더불어 사건사고 현장에서 초동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치안의 보조자에 불과했던 제주자치경찰과 달리 치안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안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융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다. 교통 사무, 생활 안전 사무, 아동·청소년 사무에 있어서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을 연계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를 들면, 교통사무에 있어서 교통사고 통계와 시설보완이 합치된 현장 중

6)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미납자가 발생해도 제주자치경찰은 즉결심판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 국가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하며 현장에서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체포권이 없어 정당한 경찰력 행사가 어렵다(안영훈, 2018)

심 교통행정이 가능하다. 관계부서와 협업으로 치안현장과 범죄 환경 개선이 합치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추진이 가능하며, 학교안전 위해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학교안전경찰관, 학교 안전지킴이 등)하여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국가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경찰공무원대상(8,625명) 설문 조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의견이 86.8%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주요한 이유로는 ‘광역적 치안상황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가 31.6%, ‘지방간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가 20.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반대 의견이 응답자의 77.8%를 차지하였다. 자치경찰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7%,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4.3%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도 ‘치안서비스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6.3%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87.5%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관의 의견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를 차지하였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12.9%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직 경찰공무원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수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찰사무의 배분

(1) 사무배분의 일반적 논의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적 행위를 의미한다(박재희, 2019). 사무배분에 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및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이며,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김필두·한부영,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배분 원칙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종합성, 자율성, 지역주민생활과의 밀접성, 책임성, 포괄성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7) 국회의원 김영우 의원실(2019.10.04.) 경찰도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이 설문조사는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참여하였다.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명확한 사무 및 권한 배분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김영식 외 20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배분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인력추산, 조직형태 설계, 예산추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천근, 2014).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치분권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규모의 치안수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안전, 교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생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수사 분야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역할 분담 및 수행 방법은 광역시·도 경찰위원장과 지방경찰청장 간 협약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활동과 관련한 수사로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 생활안전 수행사무는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및 112신고 출동, 주민참여 방법 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한다. 교통 수행사무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을 포함한다. 지역 경비 수행사무는 지자체 및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등 행사 경비, 재해·재난 초동조치 대응 등을 포함한다. 자치경찰의 주민 밀착형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경계가 애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치경찰 수사 사무에 대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주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수사,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 법집행력 확보 수사,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자체 책무와 결부된 수사 담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자치경찰 수사 사무 현황

분야	유형	
주민 기초 생활과 밀접	성폭력	•음란공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교통사고	•교통사고 등(뺑소니, 사망, 12개 항목, 물피 도주 제외)
현장 법집행력 확보	•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포함), 무면허 운전 •자치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관공서 주취소란 사범	
특사경 수사	•지자체 특사경 사무 36종	
지자체 책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등	

출처: 자치경찰추진본부 내부자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3) 공동사무

경찰사무의 배분에 있어서 공동사무는 법령상 사무 처리권자를 국가 경찰 및 자치 경찰로 규정한 사무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단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처리하게 될 사무를 의미한다. 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경찰의 관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거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의 중복성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 반면에,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동사무 존재로 인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의 중복과 업무의 혼선, 그리고 업무 떠넘기기 및 권한 갈등을 지적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공동사무의 예로는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범 단속에 관한 사무,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 단속에 관한 사무 등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여 업무 혼선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자치도특별법 제91조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과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협약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공동사무 또는 사무 중복에서 기인하는 치안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과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94조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장을 장소·시간적으로 구분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경찰이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영식, 2017). 또한, 경찰사무 배분에서 오는 가외성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업무를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김영식, 2017). 자치경찰 도입의 초창기에는 중복사무는 부득이한 것으로 공동사무에 의해 가외성이 확보되고, 발전기에 접어들어서는 자치경찰의 주도적 사무가 확대되면서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안정기에는 대부분의 사무가 고유사무 영역이 되어 자치경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자치경찰운영 능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로 고유사무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해 가는 것이다.

2. 부산광역시 치안 및 경찰조직 현황

1) 치안 수요 및 지표

(1) 치안 수요

부산의 치안현황을 인구·지리적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총 인구 수는

2018년 기준 344만명으로, 2000년 379만명 대비 약 35만 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18~34세)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인구 비율은 20.8%로 전국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7대 도시 중 최저 수준이다. 노인인구는 56만 5천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등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등록이 되지 않는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기초수급 보호를 받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정신문제 관련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우려가 된다. 고독사, 생계비관 자살, 정신질환 문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가경찰제 하에서 순찰횟수 증가시 일반 범죄 해결을 위한 인력 부족, 업무량 증가 등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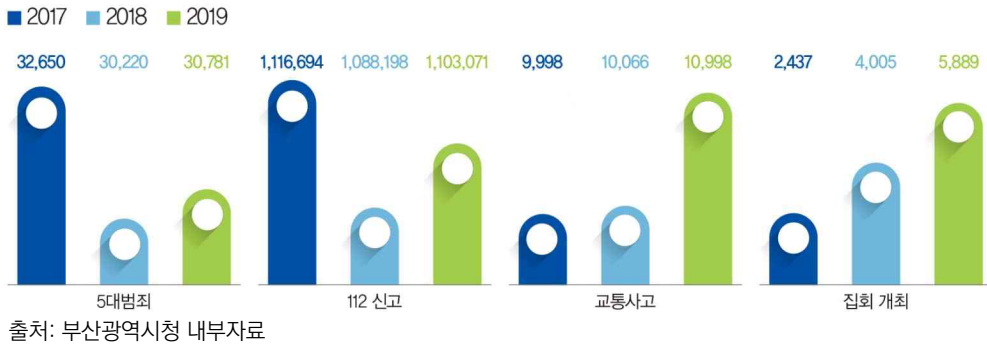
지리적으로 부산은 산지와 해안가, 도심과 구시가지, 공단과 농업지역, 항만과 공항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어 행사경비, 하절기 치안, 국제 행사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혼재되어 있다. 부산해맞이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등 범지역적 시민참여 축제 활성화에 따른 혼잡경비·교통관리 수요도 점증하고 있다. 해운대, 광안리 등 주요 해수욕장 지역은 여름경찰관서 한시 운영(7~8월)으로 탄력적 대응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벅스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대형 회의시설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상시 개최하는 등 각국 정상 및 외교사절 경호 수행도 잠재적 치안수요 중의 하나이다.

부산은 대외적으로 동북아 물류허브이자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내국인·외국인 방문객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환적물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2018년 부산 방문 관광객은 총 279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각 권역별 대형 사업이 개발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및 금융 거점으로 개발, 금융단지 내 항만·물류 기능 확충 및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추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계획 등의 도심권 치안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정보 및 관광 거점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제2센텀시티 개발, 동부산관광단지, 남해안관광벨트 역점사업 진행 등 동부산권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부산권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신항배후지, 서부산유통단지, 신호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구축 진행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치안 지표

주요 치안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와 집회 개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5대범죄와 112신고는 2019년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은 전국 인구비율(6.7%) 대비 5대 범죄·112 신고·집회 시위가 많은 편이며,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최근 3년간 변화 추이(1~10월 기준)



〈표 2〉 전국 대비 주요 치안지표 현황 ('19년 1~5월 기준)

구분	5대 범죄(발생)	112 신고	교통사고	집회 개최
부산(건)	30,781	1,103,071	10,998	5,889
전국(건)	414,112	15,963,022	188,775	79,179
대비(%)	7.4%	6.9%	5.8%	7.4%

출처: 부산광역시청 내부자료

치안 고객 만족도와 체감 안전도를 전국 지방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부산 치안 고객 만족도는 82.3으로 특·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안 고객 만족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산지역의 체감안전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부산지역의 체감안전도는 71.1, 71.6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국 지방청별 치안 고객 만족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75.9	77.1	77.6	77.0	75.8	76.8	78.3	75.5	74.6	77.6	78.4	78.2	79.9	79.9	78.2	78.3	76.4
17년	73.9	75.6	74.6	73.9	73.4	75.7	76.6	73.3	72.3	74.4	75.3	73.5	73.5	74.3	73.8	74.6	72.1
18년	78.0	82.3	79.5	79.4	77.0	80.2	79.8	78.2	81.0	78.0	79.6	80.5	79.3	78.9	77.9	80.7	79.5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4〉 전국 지방청별 체감안전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상	68.5	68.6	68.6	68.2	64.0	68.2	66.2	67.8	69.3	70.1	67.9	67.5	70.9	71.9	70.8	68.9	65.0
16년하	68.4	68.1	68.6	69.1	67.0	69.3	67.8	68.8	69.1	71.4	70.6	68.9	72.0	73.3	72.2	69.8	65.8
17년상	71.6	70.1	71.5	71.2	71.3	71.5	70.3	71.1	72.0	75.2	72.4	72.9	75.8	76.0	74.7	73.8	71.3
17년하	71.4	70.9	71.6	71.5	71.8	71.3	71.6	71.1	73.1	75.8	73.2	73.5	76.6	76.6	75.4	73.7	71.1
18년상	71.7	71.1	71.6	70.5	70.6	71.9	70.5	71.0	72.2	75.5	73.2	74.2	75.5	76.0	75.2	73.4	71.3
18년하	73.1	71.6	72.1	71.7	72.3	73.9	70.8	72.3	72.4	75.4	73.5	72.5	76.2	76.1	74.5	73.9	71.1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공개하는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부산은 생활안전 분야에서 1등급을 기록하였으며, 자살 분야에서는 5등급을 기록하였다. 특히, 부산은 자살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자살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광역시의 감소 정도보다는 적고 자살 취약계층도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부산광역시는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하여, 범죄·자살·감염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5년 연속 5등급 지역은 강서구(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 중구(범죄 분야), 동구(범죄·감염병 분야)로 나타났다.

〈표 5〉 2019년 특·광역시 분야별 안전등급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서울	1	2	5	2	1	4
부산	2	2	4	1	5	4
대구	3	4	2	2	4	5
인천	2	3	3	4	3	2
광주	3	1	3	3	2	1
대전	4	4	4	4	4	3
울산	4	3	2	3	3	3
세종	5	5	1	5	2	2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경찰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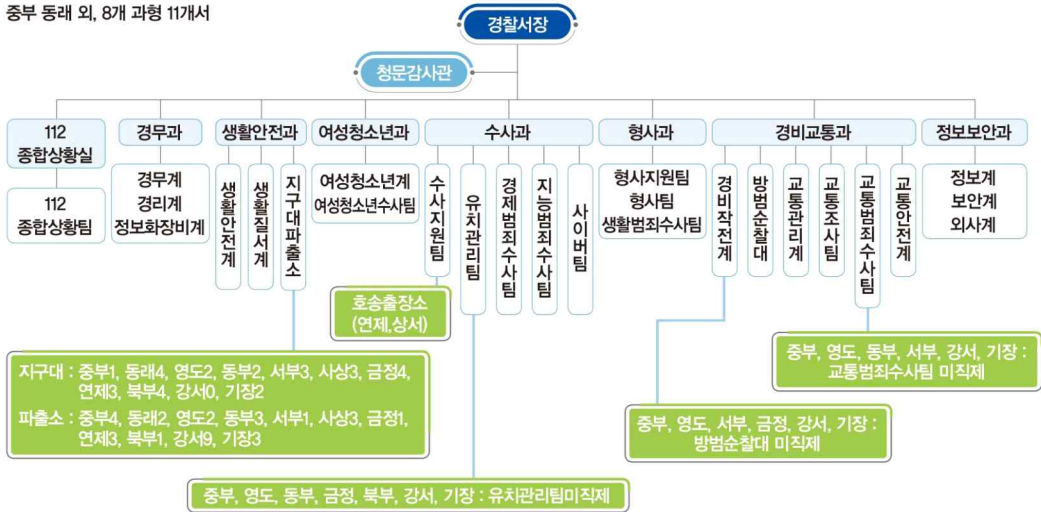
현행 경찰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순서로 계층화 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행 경찰조직의 지방청별 정원(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본청이 1,128명이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7,184명, 경기남부가 16,884명, 부산이 8,816명, 경북이 6,390명으로 인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18). 부산광역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15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부산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은 3부, 2담당관(홍보, 청문감사), 1직할대, 1실(112종합상황실), 13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는 지구대 49개(2,520명), 파출소 44개(1,171명), 치안센터 92개가 운영되고 있다(2019년 기준). 지방청에는 경찰관 1,517명, 일반직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서에는 경찰관 7,516명, 일반직 160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경찰서는 크게 4가지 유형(8개 과형, 9개 A/B과형, 10개 과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은 경찰서장 아래에 청문감사관, 112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8개 과형으로 중부, 동래, 영도, 동부, 서부, 사상, 금정, 연제, 북부, 강서, 기장이 있으며 경비과와 교통과가 경비교통과로, 정보과와 보안과가 정보보안과로 통합되어 존재한다. 9개 A과형으로 사하는 정보과와 보안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경비과와

교통과가 통합되어 경비교통과로 존재한다. 9개 B과형으로 부산진, 남부 2개서는 경비과와 교통과가 분리되어 있으며, 정보계, 보안계, 외사계가 통합되어 정보보안과로 존재한다. 10개 과형은 해운대로 정보·보안 기능이 정보과와 보안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2〉 부산광역시 경찰서 8개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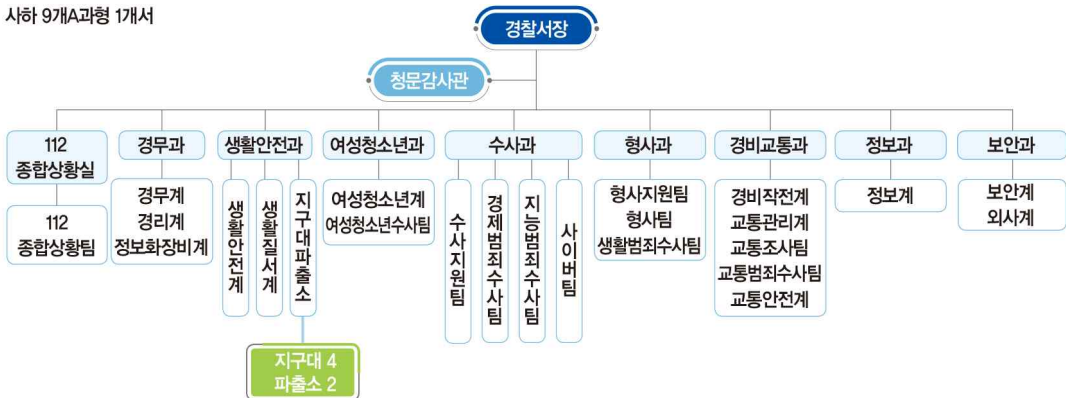
중부 동래 외, 8개 과형 11개서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내부자료

〈그림 3〉 부산광역시 경찰서 9개 A과 형

사하 9개A과형 1개서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내부자료

〈그림 4〉 부산광역시 경찰서 9개 B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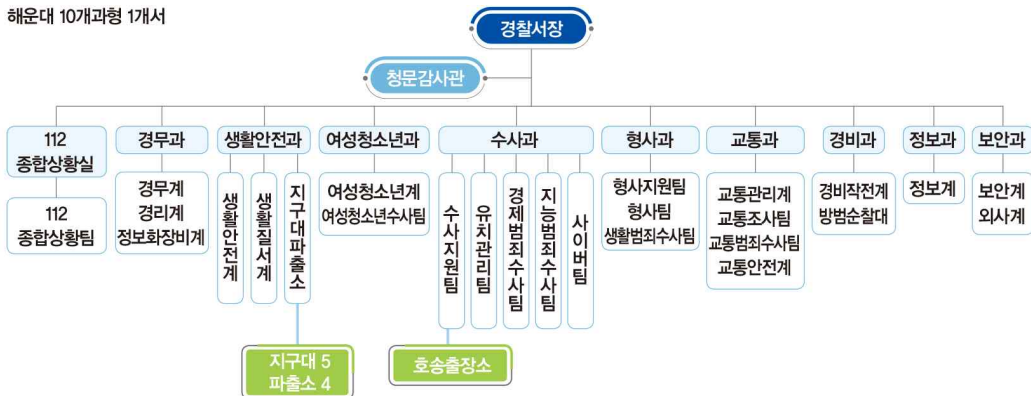
부산진 남부 9개B과형 2개서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내부자료

〈그림 5〉 부산광역시 경찰서 10개과 형

해운대 10개과형 1개서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내부자료

Ⅲ.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제 모형(안) 설계

1. 법·제도 기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 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경찰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소속으로 부산자치경찰에 대한 조직·인사·재정 등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 및 평가, 조직·인사·예산·사무·장비·통신 등 운영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자치경찰본부장 및 대장 후보자 추천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자치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자치경찰에 대한 민원처리요구,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 요구, 자치경찰의 고충심사,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과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운영,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요구, 자치경찰 임무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 그 밖에 시장, 자치경찰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찰위원회 회의에 부친 사항,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⁸⁾ 부산광역시 경찰위원회는 정책 및 대안을 부산광역시장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위원회는 총5인으로 구성되고(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경찰위원회 위원은 임기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장이 1인은 지명하고, 부산시의회 2인, 대법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한다. 부산광역시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인 위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 경찰위원회 관리하에 광역시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자치구에는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대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를 설치하고, 국가경찰 소속의 순찰대와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민생치안활동을 지원한다.

2) 자치경찰본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는 부산광역시의 치안에 대한 책임기관으로서 치안 업무를 통합·관할한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는 부산광역시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되며, 부산광역시 경찰위원회는 본부장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가지게 된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감으로 부산광역시 경찰위원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며, 정치적 독립과 책임치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임기 2년을 보장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원칙으로 한다.⁹⁾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¹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는 행정협력관, 생활안전과, 교통과, 취약계층과, 산업경찰과, 수사과, 안전정보센터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행

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 발의)을 참조하였다.

9)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장을 공개 모집하며, 개방형 직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제 개방형 직위 운영지침(안)에 따르도록 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되었다.

1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 발의)을 참조하였다.

정협력관은 자치경찰의 대외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경찰과는 관광경찰팀, 항만경찰팀, 해양경찰팀, 농·산림경찰팀으로 구성하여 해양, 항만, 관광지 등 부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정보센터는 부산광역시 안전 취약지역 분석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데이터 분석팀과 민원관리팀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분석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어느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범죄의 종류와 범행 장소 등 변인 등을 알고리즘에 넣어 잠재적 재범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민원관리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분야별, 사업별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안전정보센터는 향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안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방법·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 조직(안)



3) 자치경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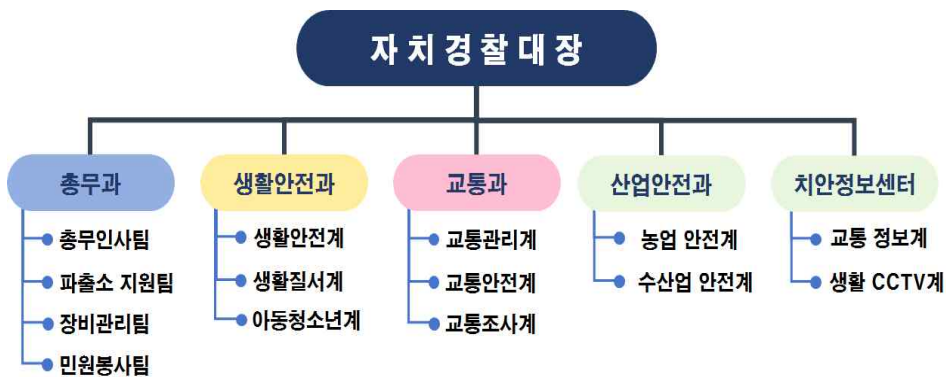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대는 자치경찰본부 소속으로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아래에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자치경찰대장은 부산광역시 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본부장,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한다. 자치경찰대는 조례로 정한 관할 구역 내의 자치경찰 사무의 현업 업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수행 사무의 범위는 경찰법에 제시된 사무를 포함하며, 사무 수행방식은 자치경찰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는 지역 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교통·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¹¹⁾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자치경찰대, 경

11)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 발의)을 참조하였다.

찰위원회, 시장간 협약에 의한 자치경찰대의 사무범위에 대한 조정과정이 있을 것이고, 자치경찰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수사의 절차나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치경찰대의 조직체계는 상이하게 구성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이 표준형을 제시할 수 있다.¹²⁾ 해수욕장 관리 등 해안 관광 기능이 필요한 해운대구·수영구는 산업안전과 아래에 해양안전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림 8〉 부산시 자치경찰대 기본모형



자치경찰대의 설치는 ‘행정구역 일치형’(제1안)과 ‘치안수요 고려형’(제2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구역 일치형은 일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이며 치안수요 고려형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행정구역 일치형 자치경찰대 구성은 부산광역시 행정구역과 자치경찰대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일선 구청과 자치경찰대가 협업하여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치경찰 치안업무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주민보호 사무를 확대·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일치형은 자치경찰대와 국가경찰의 관할구역을 달리함으로써 국가경찰과 협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 등으로 인한 치안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치안수요 고려형 자치경찰대 구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할구역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대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적 분업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치경찰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청이 주민안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소방·방재 등 재난안전사무와 관할권이 유사함으로써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소방서 간 협력이 가능하여 통합적 치안대응을 가져올

12) 자치경찰대는 지구대·순찰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자치경찰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치안수요를 고려한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구역별 특성과 사무 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예상된다.

3. 인력 및 재정수요 예측 및 확보 방안

1) 인력 수요 예측 및 확보

부산광역시의 자치경찰 인력수요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이관인력규모, 자치경찰의 법정사무의 규모와 사무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 유동인구, 자치경찰조직 설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시범운영 개요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력을 1단계 2019년까지 7,000~8,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단계 30,000명~35,000명으로 전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3단계 예정된 자치경찰사무를 100% 실시할 경우 43,000명으로 인력수요를 예정하고 있다. 시범실시 초기 단계에서는 인력과 재정을 고려하여 일부 사무를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에서 43,000명의 국가경찰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부산광역시에 예정된 자치경찰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안은 부산광역시 지방 경찰청의 정원 9,193명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사무를 36~40%로 추정하여 약 3,200~3,700명의 인력이 자치경찰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안이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경찰청 정원대비 36% ($9,193 \text{명} \times 0.36 = 3,290 \text{명}$), 40% ($9,193 \text{명} \times 0.4 = 3,677 \text{명}$) 정도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의 필수적 인력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국가경찰인력 대비 이관인력 비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약 3,200명이 산출되는 안이 있다. 전국 경찰관 정원현황(2019년 6월)은 총 120,918명으로 이 중 부산 국가경찰은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 이관인력은 4,300명 대비 약 7.4%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3,182 \text{명} = 43,000 \text{명} \times 0.074$). 국가경찰 인력의 경우는 치안사무의 보조자인 행정관에 대한 인력은 반영하지 않아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국가경찰 정원 이관시 경찰공무원 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관 인력까지 산출하여 지원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안은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에 50% 이관한다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국가경찰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요원 1,841명, 생활안전사무를 담당하는 561명, 교통사무를 담당하는 735명, 여성·청소년사무를 담당하는 416명을 자치경찰에 이관한다는 논리에 따라 추정인력 3,553명을 예상한 안이 있다($1,841 \text{명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 + 561 \text{명(생활안전)} + 735 \text{명(교통)} + 416 \text{명(여성·청소년)} = 3,553 \text{명}$).

우수한 자치경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질을 갖춘 경찰관의 채용, 국가경찰 이관시 일계급 특진 또는 성과상여급의 제공 등 채용, 승진, 보수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채용방식은 일반인 공개채용, 특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가 공개채용, 여성인력, 특사경 특별 채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사의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일반인 공개채용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우수 인력 확보 방안으로 자치경찰 계급 축소, 특진·승급, 복지포인트·특근 매식비, 당

직비, 정기 재직 휴가 등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가경찰보다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 10만, 매식비 2천원, 당직비 3만원, 정기 재직 휴가 10~20일을 제공하고 있다.

2) 소요예산 추정 및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소요 재원 규모는 부산지방경찰청 이관인력규모에 따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의 규모나 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재정계획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인건비는 제주자치경찰 인건비(2019년)를 참고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2019년 제주자치경찰 인건비 총액은 90억원으로 경찰관 1인당 인건비는 53,25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경찰청 예산자료인 성질별 경찰예산에서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예상해 볼 때,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경찰관 1인당 인건비 = 5.3천만원(90억원 ÷ 169명(제주자치경찰 정원))
 경찰관 1인당 기본경비 = 3.5백만원(4,211억원(기본경비)/120,918명(총 정원))
 경찰관 1인당 사업비 = 1.7천만원(2조 602억원(사업비)/120,918명(총 정원))

이관예상인력을 3,200명으로 가정할 경우 인건비 1700억, 기본경비 112억, 사업비 544억 등 소요재원은 총 2,356억으로 추정된다.

총 인건비 = 1700억원 (3,200명 × 5.3천만원(경찰관 기준인건비 평균금액 가정))
 총 기본경비 = 112억원 (3,200명 × 3.5백만원(성질별 경찰예산 1인당 비용 환산))
 총 사업비 = 544억원 (3,200명 × 1.7천만원(성질별 경찰예산 1인당 비용 환산))

경찰법 개정안 제4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³⁾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기본원칙은 포괄이양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시에도 인력, 조직, 장비, 재원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업무에 따라 국가경찰의 예산을 함께 이양함으로써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담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자치경찰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이 아닌 미래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격차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자치경찰제 실시 이전에 전국 표준적인

13)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 발의)을 참조하였다.

14) 자치경찰의 운영비는 영국자치경찰의 경우처럼 국가 80%, 지방이 20%의 비율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영국은 의로서비스 등 중앙접권적인 행태가 강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비율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 수준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¹⁵⁾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포괄보조금 신설, 국세-지방세 이양 등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세-지방세 이양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부세는 지방세원이 열악한 재정 낙후지역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포괄보조금은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으로 국세-지방세 이양 방식이 자치분권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통한 재정 지원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¹⁶⁾에서 일정 비율을 자치경찰특별회계로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⁷⁾

자치경찰 청사·시설·장비 마련은 국가경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사무공간과 인력중복의 최소화를 위해 광역에 설치하는 자치경찰본부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구·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원화 모델은 청사, 장비 등이 이중적으로 소요되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투트랙 실시로 효과성이 높은 모델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찰서 일부를 통합하고, 한 곳을 자치경찰이 시설·장비 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치경찰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통신 및 행정 장비 등에 대한 현대화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의 정보화 인력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IV. 부산형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 연계 방안

1.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연계

부산광역시청은 본청 1과 3팀(환경수사팀, 식품수사팀, 공중위생수사팀) 25명(행정6, 보건6, 식품위생 5, 환경 4, 농업 1, 사무운영 1, 운전1)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 전체 특사경은 시 103명, 자치구·군 323명 등 총 4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청소년, 의약품, 교통, 소방 등 17개 분야이다. 자치단체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1년 6개월 ~ 2년 정도)으로 전문수사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피의자, 참고인의 해당 관할 부재시 잦은 이첩으로 수사의

15)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16)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물건값의 10%)를 걷은 후 소비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내려주는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1%이며 2020년에는 21%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17)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 환경, 농식의약품, 산림, 공원, 문화재에 대한 부산의 수요를 고려할 때, 자치경찰과 구·군의 업무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구·군의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구·군의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제를 분리하는 대안, 구·군의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제를 통합하는 대안, 그리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무를 자치경찰이 보완하는 대안이 있다.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안은 특사경과 자치경찰의 사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능률성과 합법성 차원에서는 통합 방안이 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¹⁸⁾ 구와 군의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는 방안은 일면 특사경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듯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행정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직·지방직 공존에 따른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결국,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강조하는 자치경찰제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특사경 조직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군에서 특사경 업무를 현재와 같이 추진하면서, 일부는 자치경찰이 보완해 주는 방안이 가장 적실할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복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본부장과 협의하여 업무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구·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직무가 해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외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환경이나 산림 업무, 수산물 먹거리 관련 단속 업무에 있어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연계가 특별히 요구된다.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업무 연계가 가능한 분야는 식품위생분야, 청소년 보호 분야로 협력관을 상호 파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⁹⁾ 자치경찰과 특사경 업무를 연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 위계 차이에 따른 조직권한 갈등, 자치경찰과 특사경 기능의 중복에서 오는 갈등, 인허가 담당자와 특사경 수사 담당자간 업무 이해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찰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과의 계급 편제 정비 등 명확한 업무분업체계 구축, 경찰 경비·수사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 간 상호 이해 방안 마련 등의 개선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자치경찰과 특사경에 대한 신분규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신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²⁰⁾

2.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연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하여 자치경찰이 부산광역시청의 어떤 조직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향후 연계가 필요한 조직 및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

18)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19)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20)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단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무들은 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무, 도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사무,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사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부산광역시와 광역시 내 구·군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난·안전사고에서부터 치안업무로 사무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한 민생치안활동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조직간 연계 필요성은 증대된다. 특히, 주민센터와 자치경찰대간, 자치경찰본부와 소방 재난안전본부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요구된다.²¹⁾ 또한, 경찰청과 시청의 실무진뿐만 아니라 고위급 간 실시간 협의할 수 있는 채널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국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해경과의 협력 등 대외협력업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협력부서에 대한 개편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²²⁾

자치경찰이 도입될 경우, 현재 부산광역시청의 행정자치국 또는 시민안전실과 연계가 가능하며, 구·군과 협조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향후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사무 발굴 업무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과 CPTED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자치경찰이 참여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보완적 제공과 함께 사업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시 일반행정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주민센터와 자치경찰 간 핫라인 설치, 1인가구 범죄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적 순찰 요청 등을 포함한다. 자치경찰과 일반행정의 서비스 연계와 함께 119 구급 및 소방행정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는 지역 주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여성, 청소년 등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단속위주에서 개선 및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도입될 경우 교통정보센터의 교통관리와 경찰의 신호제어업무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통합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화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집행이 가능하다.²³⁾

특히, 도시 안전이 단체장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설정되면서 안전 도시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구호 및 재난 분야에서 소방-자치경찰 간 협력이 필요하고, 관광지 운영 및 관리 분야 그리고 방범·치안 활동을 위한 지원 분야에서도 자치경찰과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⁴⁾ 다만, 자치경찰과 행정조직과의 연계에 있어서 계급상 차이 및 지위체계상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 각 조직의 전문성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 간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⁵⁾

21)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22)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23)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24)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3.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연계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등 직능 단체들을 잘 활용하여 자치경찰 도입시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 등 마을 공동체 단위 조직 활동은 일정한 예산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마을 공동체 단위조직의 회원들이 생업에 치중하다 보면 조직의 활동에 소홀해 질 수도 있고, 일정한 교육훈련이 없을 경우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 친목단체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지구대·파출소와 동 행정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지구대 파출소로 하여금 지역의 자율방범대 등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홍주, 이시원, 2019). 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통해 노인, 1인가구 보호,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해서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치안 파트너십을 안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 직능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동네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협 요소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활성화는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안 마련이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서비스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로 특별 채용하거나 봉사활동 점수를 가점하는 등의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주민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구대별 범죄예방 민간경비업체와 자치경찰 조직 간 정보공유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은 경찰업무에 보완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잘 이해하고,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자전거순찰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연합회 등 다양한 주민자치조직이 치안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계획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마을공동체 단위의 구성은 잘 되어 있으나, 자치역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자치역량 교육이나 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과의 유착

관계 문제 때문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별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

부산광역시와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치안문제협의회 같은 공식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자율방범대 등 주민자치 조직은 자치경찰대·파출소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조직화 될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 등이 치안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마을 공동체 허브로 지역별 자치경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 또는 동네 치안 정책을 기획하고 위협요소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체 활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 중, 학교 폭력의 근절에 대해서는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하고, 지역 교통사무에 대해서는 안전지킴이, 생활안전사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²⁷⁾ 다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민관이 협력적인 틀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고 부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보공개와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의 차별화 전략

지방자치단체 제1의 역할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주요한 논의대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안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시민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수직적인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 시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하는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일등 치안 도시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항구 도시로서의 치안 확립,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이 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해양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시행시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과 자치경찰 간 관할 구역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비탈에 위치하거나 붕괴 위험에 처한 도로가 많아 교통질서 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화재·범죄·감염병 등에 취약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 단절 등에 따른 고독사 등의 정책 문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본부 산업경찰과에 관광경찰팀, 항만경찰팀,

26)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27) 부산광역시청 전문가 자문회의 (2019.10.16)

해양경찰팀 등을 두어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²⁸⁾ 또한, 취약계층과에 아동안전팀, 여성안전팀, 장애인안전팀, 노인안전팀을 두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본부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정보센터는 범죄 및 교통사고 데이터와 일반 행정 정보를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안심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특성에 특화된 창의적인 서비스는 관광 자치경찰 서비스, 해양 자치경찰 서비스, 효(孝) 자치경찰 서비스, 산림(등산로) 자치경찰 서비스, 원자력 안전 자치경찰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과 특사경,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자치경찰과 주민자치 연계성을 강화하면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완결성이 제고되고, 중국에는 치안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찰이 경찰력을 행사할 때보다 지역 기반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토착세력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임명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토착세력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부당한 경찰력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행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대장에 대한 성과평가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장구 상시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으로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고 부산광역시의 재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구별되는 부산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한 인력·재원 계획 등 선제적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수요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방행정 사무와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치안행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 주민 안전체감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18.3.11.
 경찰청(2018).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2019),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자료 등 내부자료.
 김성호(2012).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2), 111-137.

28) 해양경찰과 협력해야 할 사무와 해양경찰 사무 중에서 자치경찰에 이양될 사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해상범죄 및 해상사고 예방, 불법어로 단속·과적 방지 등 해상질서 유지활동, 안전항로관리, 좌초선박 선원 및 익수자 구조 등 해난수색 및 구조, 수상레저안전지원, 해양오염 감시·폐기물 검사 및 관리 등 환경오염방제, 해양환경보호 기능 등은 향후 자치경찰로 이양되어 처리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윤희중, 2018)

- 김영식(20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 107-116.
- 김영식 외(2017).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영우 의원실(2019). 전국경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김필두·한부영(2017). 고령사회 대비 중앙-지방 간 노인복지기능 분담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1
- 박재희 (2019).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3), 37-63.
- 부산광역시(2019). 자치경찰 도입방안 내부자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안영훈(2018).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 78, 36-39.
- 윤희중(2018). 자치경찰제 도입을 고려한 해양경찰조직의 재구조화 - 국가와 자치경찰간의 기능과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2), 93-113.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최종술(2017).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 발표자료.
- 최천근(20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75-296.
- 행정안전부(2019).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박재희(朴在熙):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미국 주립대학교의 다양성관리 연구, 2015)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실태에 관한 연구(2019), Mak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count for increasing organizational fit(2019),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 연구(2018) 등이 있다(jpark@krila.re.kr).

Abstract

How to Propose Busan-Type Local Police Model

Park, Jaehee

This study discussed what Busan Metropolitan City should decide and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usan-type local police model that corresponds to the dire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analyzed legislation and government document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and conducted public servant and expert opinion survey. Restructuring organization, providing citizen safety service, and linking with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with building a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can increase residents' safety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Local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City, Safety